

2014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추경예산개요

1. 세 입

○ 비상기획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기정 예산 7억 3천 2백만원과 같음.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도			증감율 ((B-A)/A)
	기정예산(A)	추경예산(B)	증감(B-A)	
합 계	732	732	-	-
시 세	11	11	-	-
세외 수입	경상적	2	-	-
	임시적	9	-	-
국고보조금	721	721	-	-

2. 세 출

○ 비상기획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60억 2천 9백
만원으로 기정 예산 58억 5천 9백만원 대비 2.9%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도			증감율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총 계	5,859	6,029	170	2.9	
행정 관리	소 계	5,859	6,029	170	2.9
	행정운영경비	165	165	-	-
	재무활동	-	-	-	-
	사 업 비	5,694	5,864	170	3.0
교 부 금	-	-	-	-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14 예산		2014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9.15 현재)		증감	비율
합 계	5,859	5,859	6,029	170	2.9%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지원	2,070	2,070	2,240	170	8.2%

II . 검토의견

1. 세출예산 검토

- 금번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지원” 사업에 1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가.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지원

-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지원사업은 서울시 재향군인회의 노후된 향군회관 건물(종로구 인의동 소재)을 현대식으로 개·보수하여 시민안보교육 등 국가 안보관련 사업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고, 재향군인을 예우함으로써 재향군인회 위상을 제고하며, 재정적 지원(개·보수에 따른 임대료 증가 등) 효과를 통하여 재향군인회 육성·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재향군인회관의 개·보수공사를 위하여 당초 20억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공사진행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이 발생함에 따라 금번 추경에 1억 7천만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지원사업 추가경정요구(안)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민 간 자 본 보 조	2,240,000	2,070,000	17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거공사비용증가 61,100 ◦ 기존건물 설계변경 27,500 ◦ 석면해체 및 반출비용 35,200 ◦ 엘리베이터 철골구조보강 18,440 ◦ 기타 공사 추가 비용 27,760

- 동 사업은 재향군인회원들이 회관 건물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재향군인을 예우함과 동시에 재정적 지원 효과(임대료 상승 등)를 수반함으로써 불우재향군인회원의 지원, 안보 교육사업의 지원 등 재향군인회 목적사업 지원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지원사업이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1) 및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제6조2)에서 정의하는 ‘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사업은 당초 사업기간이 3년이었으나, 2014년 예산편성시 사업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총사업비도 당초 20억원에서 22억2천만원으로 증액한 바 있으나, 금번 추경을 통해 또 다시 1억7천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1)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사업) 재향군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재향군인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3.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4. 국제재향군인회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
5.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제6조 (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3.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또한, 동 사업의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당초 재향군인회의 “민간자본 보조금 신청서 제출” 공문(향군행 제56호, 2014.2.20)에 ‘서울시 사업비 보조금(2,070,0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서울시 재향군인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제출했던 사안을, 공사비 초과금액이 발생하자 또 다시 서울시에 추가지원을 건의(2014.7.22.)해 옴에 따라 금번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추가 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향후 추진되는 공사시행에 대한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지원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자문결과(2014년 9월 18일)

- ① 허태욱 변호사(허태욱 법률사무소) : 재향군인회의 특정한 목적사업과 관련없이 재향군인회관 건물의 일반적인 개·보수 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나, 재향군인회의 특정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향군인회관 개·보수로 해석될 수 있다면, 서울시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지원이 현행 법령에 저촉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음.
- ② 박상욱 변호사(법무법인 창조) : 서울시 재향군인회관의 개·보수는 시설의 운영에 관련된 비용으로서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가 목적하고 있는 특정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므로, 서울시 재향군인회관의 개·보수 비용 지원은 서울시 지원조례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③ 박상기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재향군인회관의 개·보수는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제6조의 사업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한 시설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보아야 함.

나. 집행실적 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

- 2014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014년 8월말 현재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있는 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와 향후 예산편성상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 등이 요망된다 하겠음.

〈2014년 8월말 현재 70%이상 미집행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8월말현재 지출액	집행잔액	미집행률	비고
을지연습 실시 (전산개발비)	38,000	0	0	38,000	100.0%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행사실비보상금)	25,200	0	0	25,200	100.0%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국외업무여비)	10,000	0	0	10,000	100.0%	
공익근무요원 관리 (사무관리비)	5,495	468	468	5,027	91.5%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13,000	1,494	1,494	11,506	88.5%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자치단체자본보조)	325,000	0	0	325,000	100.0%	
민방위교육장 운영 (기타보상금)	2,000	439	439	1,561	78.1%	